

##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반영여부 공개 관련규정

환경영향평가법 [법률 제18432호, 2021.08.17, 타법개정]	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369호, 2023.03.31, 일부개정]
<p>제25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)</p> <p>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<b>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</b>하여야 한다.</p>	<p>제43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)</p> <p>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<b>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</b>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<b>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</b>해야 한다.</p>